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컨벤션부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18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이희배

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조항에 맞게 관련조항을 조정함
(안 제10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